

영등포구의회  
제1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07. 11. 29.



行 政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제 명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
- 위원회의 목적(안 제1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영등포구”라 한다)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민원심의위원회를 둔다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변경(안 제1조)

●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를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로 변경(안 제2조1항)

● **조문삭제 : 제2조1~4항**

-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건의
- 분쟁의 조정·알선
-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건의

● **조문신설 : 제2조1항1~7호**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안 제2조1항1호)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안 제2조1항2호)
- 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2조1항3호)
- 처리주무부서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안 제2조1항4호)
- 처리주무부서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안 제2조1항5호)

- 서면의견진술에 따른 민원의 심의(안 제2조1항6호)
-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안 제2조1항7호)

● **조문신설 : 제2조2항1~3호**

- 제1항제5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안 제2조2항)
-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안 제2조2항1호)
-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안 제2조2항2호)
-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안 제2조2항3호)

● **구성(안 제3조)**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 해당민원 소관국장으로 변경(안 제3조2항)

● **위원의 임기 등(안 제4조)**

다만,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당해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를 ⇒ 다만,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자로 변경(안 제4조1항)

●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해당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안 제4조2항)**

● **회의의 운영(안 제6조)**

회의시마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회의 때마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로 변경(안 제6조2항)

● **위원회의 소집 등(안 제7조)**

위원 3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로 변경(안 제7조2항)

● **회의록 등(안 제8조)**

회의의 일시를 ⇒ 회의 일시로 변경(안 제8조2항)

● **위원회의 간사(안 제9조)**

서기는 감사담당관 민원관리담당주사를 ⇒ 서기는 고충민원 담당주사로 변경(안 제9조2항)

●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조사(안 제10조)**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영등포구 소속 실·국장을 ⇒ 민원인과 민원사항이 관련된 구 본청국장, 보건소장으로 변경

 **참고사항 자료 : 따로붙임**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 「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3조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관련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이 2006년 3월에, 동법 시행령이 2006년 5월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전부 개정하게 되어, 우리구 관련 조례도 이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목을 ‘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관련법 용어에 맞추었고,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주요안건을 심의·조정하기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기능과 안 제3조에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한 것이고, 그밖에 조문수정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개정된 것입니다.

다만 안 제7조에 회의를 개의하고자 할 때 ‘위원3인 이상’의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조정하는 것은, 회의 개의의 자유로움을 제한시키며, 회의소집을 현행보다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법 제37조에 민원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라고 명시된 것처럼 우리구에 유사기능과 중복성은 없는지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각종 분쟁을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지역주민들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시행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11. 29.

보 고 자 : 김 병 욱

# 관 계 법 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 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제36조제6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외부법률전문가 외에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95.06.10)

1.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 건의(개정1995.06.10)
2.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개정 1995.06.10)
3. 영 제29조제1항 각호의 사항 (개정2001.01.0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9조제2항 각호의 사항 및 타법령에 의하여 해당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01.01.05)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 부시장이 된다.(개정2001.1.5)

②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여성계, 기타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개정2001.1.5)

③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2001.1.5)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이하 <u>영등포구</u>)라 한다)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u>영등포구에 민원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 (기능) 위원회는 <u>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u></p> <p>① <u>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제시 또는 시정건의</u></p> <p>② <u>분쟁의 조정·알선</u></p> <p>③ <u>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u></p> <p>④ <u>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건의</u></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제1조(목적) <u>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u></p> <p>-----</p> <p>-----</p> <p>-----</p> <p><u>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u></p> <p>-----</p> <p>제2조(기능) ① -- <u>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u></p> <p><u>&lt;삭제&gt;</u></p> <p><u>&lt;삭제&gt;</u></p> <p><u>&lt;삭제&gt;</u></p> <p><u>&lt;삭제&gt;</u></p> <p>1. <u>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u></p> <p>2. <u>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u></p> <p>3. <u>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u></p> <p>4. <u>처리주무부서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u></p> <p>5. <u>처리주무부서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u></p> <p>6. <u>서면의견진술에 따른 민원의 심의</u></p> <p>7. <u>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u></p> <p>② <u>제1항제5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p>1. <u>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u></p> <p>2. <u>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u></p> <p>3. <u>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u></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 (구성)</b>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p> <p>②위원장은 <u>구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u>부구청장</u>이 된다.</p> <p>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u>기타</u>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u>위원장이</u> 위촉한다.</p> <p>④위원장은 <u>민원인이</u>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u>심의함에 있어서</u>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항 및 <u>제3항의 규정에 의한</u>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b>제3조(구성)</b> ① -----            --1명-----15명 -----            ② ----- <u>부구청장</u> -----  <u>해당민원 소관국장</u> -----            ③ -----            -----            ----- <u>그 밖의</u> -----            -----            ----- <u>구청장</u> -----            -----            ④ ----- <u>민원인으로부터</u> -----            ----- <u>심의할 때</u> -----            -----  <u>제3항에 따른</u> -----            -----</p>
<p><b>제4조 (위원의 임기 등)</b>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b>제4조(위원의 임기 등)</b>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② <u>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u></p>
<p>제5조 (생략)</p>	<p>제5조 (현행과 같음)</p>
<p><b>제6조 (회의의 운영)</b> ①위원회의 운영은 민원사안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u>운영한다.</u></p> <p>②위원장은 <u>회의시마다</u> 제3조제3항 및 <u>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u> 위촉된 위원 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p>	<p><b>제6조(회의의 운영)</b> ① -----            ----- <u>5명</u> -----            ----- <u>운영할 수 있다.</u> -----            ② ----- <u>회의 때마다</u> -----  <u>제4항에 따라</u> -----            -----</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생략)</b>            ② 위원회의 회의는 <u>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u>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회의개최일 <u>3일전</u>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u>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u> 위원에게 <u>통지하여야</u>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u>영등포구</u>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u>위원회에 부의할</u> 민원사항을 결정한다.</p>	<p><b>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현행과 같음)</b>            ② ----- <u>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u>, -----            -----            ③ ----- <u>소집하려면</u>            ----- <u>3일 전</u> -----            ----- <u>제6조제2항에 따른</u>            ----- <u>알려야</u> -----            -----            ④ ----- <u>구</u> -----            -- <u>위원회 회의에 붙일</u> -----            -----</p>
<p><b>제8조 (회의록 등) ①</b> 위원회는 회의록을 <u>작성 비치</u>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u>회의의 일시</u>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p>	<p><b>제8조(회의록 등) ①</b> -----  <u>작성·비치</u> -----            ② ----- <u>회의일시</u> -----            -----            -----.</p>
<p><b>제9조 (간사) ①</b>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u>1인</u>과 서기 <u>1인</u>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u>감사담당관 민원관리담당주사</u>가 된다.</p>	<p><b>제9조(간사) ①</b> -----            ----- <u>1명</u> --- <u>1명</u>            -----            ② -----            -- <u>고충민원담당주사</u>-----</p>
<p><b>제10조 (의견청취 및조사) ①</b> 위원회는 민원인과 <u>민원사항과</u> 관련된 <u>영등포구 소속실·국장</u> 또는 과장, 민원발생 관할동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u>필요한 경우</u> 민원사항과 관련된 <u>영등포구</u> 소관의 서류를 <u>열람, 조사</u>할 수 있다.</p>	<p><b>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b> -----            ----- <u>민원사항이</u> ----- <u>구 본청 국장, 보건소장</u> -----            -----            ② ----- <u>필요하면</u> -----            --- <u>구</u> ----- <u>열람하거나 조사</u> ---            -----</p>
<p><b>제11조 (수당 등)</b>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u>대하여는</u> 예산의 <u>범위안</u>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b>제11조(수당 등)</b> -----            ----- <u>대해서는</u> -----            -- <u>범위 안</u> -----            ---.</p>